

	<h2 style="margin: 0;">교수업적평가규정</h2>	규정번호	3-3-4
		제정일자	2000.03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9차
		소관부서	교무입학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의 교수업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교수업적(이하 “업적”이라 한다)은 교수의 교육, 연구, 산학협력, 봉사, 학과성과, 건학이념 및 수범활동에 관한 실적을 말한다.
- 제3조(평가대상) 업적평가의 대상은 전임교원으로 한다.
- 제4조(평가위원회) ① 업적평가를 위하여 “교수업적평가위원회”(이하 “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 
 ② 평가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- 제5조(평가기준) 분야별 평가기준은 전임교원은 [별표1]교수업적평가보고서, 강의전담교원은 [별표2]교수업적평가보고서(강의전담교원), 산학협력중점교원은 [별표3]교수업적평가보고서(산학협력중점교원), 외국인교원은 [별표4]교수업적평가보고서(외국인교원)와 같다.
- 제6조(평가기간) ① 업적평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 
 ② 업적평가 대상 기간은 전 학년도로 한다.
- 제7조(제출 및 평가) ① 각 교수는 자신의 업적을 교수업적평가항목에 스스로 작성한 교수업적보고서를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.  
 ② 각 교수는 교수업적보고서의 제출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.  
 ③ 교무입학처장은 교수가 제출한 교수업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수합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8조(심의) ① 평가위원회는 교수업적평가서와 증빙자료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표를 작성한다.  
 ② 교무입학처장은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9조(평가의 유보) ① 4월 이상 연속으로 교수활동을 수행하지 못한 교수에 대해서는 대상학년도의 평가를 유보한다.  
 ② 만63세 이상 전임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 다만, 강의전담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원, 외국인교원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.
- 제10조(이의신청)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 
 ② 이의를 제기 받은 평가위원회는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평가결과의 활용)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다음 각 호에 활용할 수 있다.
1. 승진 및 재임용 평가
  2. 국외장기연수 교원 선정
  3. 교원연구학기제 교원 선정
  4. 우수 교원 선정
  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2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이 규정은 200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1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2 년 6 월 3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2 년 10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3 년 1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12학년도 업적평가대상 기간은 2012 년 1 월부터 2013 년 2 월까지로 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6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1조(평가결과의 활용) 제1호의 시행은 2017학년도 교수업적평가 결과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강의전담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원, 외국인교원의 교수업적평가의 시행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